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 1296 호 2021. 6. 24.(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05호[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1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2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 4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3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8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4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15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80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 27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81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43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37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 고시] ····· 4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39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4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857호[행정대집행 영장] ····· 4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865호[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9

안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회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6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협력체계 구축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개발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의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제4조)

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제5조)

마.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제6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중천 (인)

2021년 6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관광해양개발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별표의 기획예산담당관 분장사무란 중 제85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경제일자리담당관 분장사무란 중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의 문화체육과 분장사무란 중 제63호 및 제6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예술창작소 운영에 관한 사항

64. 의병 추모제 등 의병에 관한 사항

별표의 부서명란 중 “관광해양개발과”를 “관광진흥과”로 하고, 같은 표의 관광진흥과(기존의 관광해양개발과) 분장사무란 중 제29조 및 제32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부서명란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별표의 농수산과의 분장사무란 중 제98호부터 제10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8.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연안정비사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9.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등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100. 몽돌 침식 및 유실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1. 바다행정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2. 연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보건행정과장”을 “과장”으로, “보건행정담당”을 “과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의 주무담당주사”를 “보건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과의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부서장 직급 규정

나.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 사항 반영 및 부서별 분장 사무 조정

2.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 사항 반영

1) 관광해양개발과, 사회복지과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제3조, 제4조)

○ 관광해양개발과 → 관광진흥과

○ 사회복지과 → 노인장애인과

2) 건강증진과 신설 및 건강증진과장 직급 규정(제8조)

나.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별표)

1) 기획예산담당관 : 청년정책 사무 삭제

2) 경제일자리담당관 : 청년정책 및 지원 사무 신설

3) 문화체육과

○ 예술창작소 운영 관련 사무 신설

○ 의병 추모제 등 의병 관련 사무 신설

4) 관광진흥과(기존의 관광해양개발과)

○ 연안관리, 공유수면 관리 관련 사무 삭제

○ 몽돌 침식 및 유실방지 대책 및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사무 삭제

5) 농수산과

○ 연안관리, 공유수면 관리 관련 사무 신설

○ 몽돌 침식 및 유실방지 대책 및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사무 신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6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합계		합계	679	485	15	49	9	121(4)
		정무직	1	1				
		일반직	677	483	15	49	9	121(4)
		별정직	1	1				
정무직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677	483	15	49	9	121(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4		1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40	24	3	4	1	8
		행정	25	15	3		1	6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의무	2			2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6급	소계	141	110	3	10	2	16
		행정	65	53	3	1		8
반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11	3				8
직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2	2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6	6				
		행정/공업	4	2			2	
		세무	3	3				
		전산	1	1				
		사회복지	3	3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1	1				
		수의/의무/약무/간호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공업/환경	1	1				
		시설	14	14				
		방송통신	2	2				
		운전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7급	소계	213	164	4	15	3	27
		행정	89	66	3	1	3	16
반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7	4				3
직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학예연구	1	1				
		세무	8	8				
		전산	2	2				
		사회복지	14	7				7
		사서	3	3				
		속기	1		1			
		공업	4	4				
		공업/환경	1	1				
		농업	3	3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녹지	4	4				
		수의	1	1				
		수의/약무/간호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	2			2		
		간호	5			5		
		보건진료	1			1		
		환경	3	3				
		시설	28	28				
		시설/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4	4				
		운전	3	3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8급	소계	201	126	3	17	3	52
		행정	72	40	2			30
반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직		행정/사회복지	9	7				2
		행정/사서	3	3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시설	7	7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	7	7				
		전산	3	3				
		사회복지	17	6				11
		사서	3	3				
		공업	5	2		1	2	
		공업/환경	2	2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	2	2				
		녹지/시설	1	1				
		해양수산	2	2				
		농업	1	1				
		보건	6	2		4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	4			4		
		간호	13			5		8
		시설	20	20				
		방송통신	2	1			1	
		운전	7	6		1		
		방재안전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9급	소계	76	54	2	2	0	18(4)
		행정	32	20				12(4)
반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4					4
직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1	1				
		세무	2	2				
		사회복지	9	7				2
		사서	4	4				
		속기	1		1			
		공업	2	2				
		공업/환경	2	2				
		녹지	2	2				
		녹지/시설	1	1				
		보건	3	3				
		보건/의료기술	1			1		
		시설	6	6				
		방송통신	1	1				
		운전	2		1	1		
별	계		1	1				
정	6급	소계	1	1				
직	상당	비서	1	1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에 따른 기관·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변동 없음(679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

1) 본청 : △1명(486명 → 485명)

2) 직속기관 : △7명(56명 → 49명)

3) 동 : 증8명(113명 → 121명)

다.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1) 5급 : 증1명

○ 직속기관 : 증1명(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증1)

2) 6급 : 증1명

○ 본청 : 증1명

- 행정 증1, 행정·공업 증1, 행정·해양수산·시설 △1

○ 동 : 직렬 조정(증감 없음)

- 사회복지 △8, 행정·사회복지 증8

3) 7급 : △2명

○ 본청 : △2명(행정△2)

4) 8급 : 증1명

○ 본청 : 증1명

- 행정 △1, 행정·환경·공업 증1, 공업 증1, 농업 증1, 시설 △1

○ 직속기관 : △8명(간호 △8)

○ 동 : 증8명(간호 증8)

5) 9급 : △1명

○ 본청 : △1명(공업 △1, 농업 △1, 보건 증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6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획예산담당관 제88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 경제일자리담당관 제6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담당관·과장	실·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68.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정책 시책 발굴	기안					○
	나.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다. 청년 실태조사	기안		○			
	라. 청년정책 협력체계 구축	기안			○		

별표 1 총무과 제22호다목 및 라목 세부사무명란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1 문화체육과 제31호란부터 제44호란까지 및 제47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관광해양개발과”를 “관광진흥과”로 하고, 관광진흥과(기존 관광해양개발과) 제9호란, 제10호란 및 제15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별표 1 농수산과 제117호란 및 제118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담당관·과장	실·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17. 공유수면 관리	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변경허가(단순점용)	기안		○			
	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공사 및 대규모)	기안					○
	다. 금지행위 지도단속	기안					○
	라. 점사용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마.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방치폐선 처리	기안		○			
	사.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자 조사	기안		○			
	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자 처리	기안					○
	자.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사항 행정대집행		기안				○
	차.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처리	기안		○			
	카. 실시계획 준공검사 및 신고 수리	기안		○			
	타. 공유수면 매립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기안					○
	파. 미등록 토지 일제 정비	기안		○			
	하. 공유수면 매립 관리 및 지도	기안		○			
118. 연안 관리	가. 연안정비사업 시행		기안				○
	나. 연안안전관리 및 연안사고 예방	기안			○		
	다. 하절기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기안		○			
	라. 연안시설물 설치	기안					○
	마. 연안시설물 보수 및 안전점검	기안		○			

별표 1 환경미화과 제3호란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문화예술회관 제1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관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5. 위원회 운영	가.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	기안				○
	나.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기안		○		
	다.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 일반	기안		○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보건소 전결사항(제4조제2항 관련)

○ 보건행정과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과장	소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인사복무	가. 소내 직원 배치		기안		○		
	나. 출장명령 및 복명처리						
	(1) 소장 관내출장	기안			○		
	(2) 소장 관외출장	기안				○	
	(3) 과장(전문직의사 포함) 관내·외출장	기안			○		
	(4) 직원 관내·외 출장	기안		○			
	다. 연가, 병가 및 공가	기안					
	(1) 소장	기안				○	
	(2) 과장(전문직의사 포함)	기안			○		
	(3) 직원	기안		○			
	라. 조퇴, 외출						
	(1) 소장	기안			○		
	(2) 과장(전문직의사 포함)	기안			○		
	(3) 직원	기안		○			
	마.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비상 근무	기안			○		
	사. 당직명령 및 감독	기안		○			
2. 문서관리	가. 중요문서 보관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문서 보관 및 관리	기안	○				
	다. 각종 관인관리	기안		○			
3. 예산·회계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	가. 예산편성 및 자료 제출	기안			○		
	나. 예산배정, 자금배정 요청	기안		○			
	다. 보건시설의 행정재산관리	기안		○			
	라. 정수물품 승인 요청	기안		○			
	마. 물품불용 결정 및 처분	기안			○		
	바. 차량 운행 및 관리	기안		○			
4. 입찰 및 계약	가. 입찰공고	기안			○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결과 보고	기안			○		
	다. 입찰집행	기안		○			
	라. 예정가격 결정, 입찰 및 계약	기안			○		
	마. 계약 체결사항 보고	기안		○			
5. 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	기안					
	(1) 위원장이 부구청장인 경우	기안				○	
	(2) 위원장이 소장인 경우	기안			○		
	나. 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1) 위원장이 부구청장인 경우	기안				○	
	(2) 위원장이 소장인 경우	기안			○		
	다. 위원회 운영 일반	기안		○			
6. 기간제 근로자 관리	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기안					○
	나. 사역관리 및 급여 지급	기안		○			
7. 청사관리	가. 시설관리	기안		○			
	나. 방화시설물 관리	기안		○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과장	소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다. 전기안전관리	기안		○			
	라. 청사 소모품 관리	기안		○			
8. 보건행정	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안					○
	나.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다. 충무계획 수립	기안			○		
	라. 보건통계	기안		○			
	마. 제증명 발급	기안		○			
	바. 소득세 정산 보고	기안		○			
	사. 건강진단 등 신고서	기안		○			
	아. 국민건강영양조사 업무	기안		○			
	자.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	기안		○			
9. 진료실 및 건강관리실 운영	가.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나. 진료 및 건강관리실 운영	기안		○			
	다. 진료약품 구입 및 관리	기안		○			
	라. 진료비 조정	기안			○		
	마. 진료비 청구	기안		○			
10. 방사선실 운영	가. 방사선실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방사선 장비 등 관리	기안		○			
11. 건강검진	가. 검진기관 지정 및 취소	기안			○		
	나.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기안		○			
	다. 행정처분 등	기안		○			
	라.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기안		○			
12. 예방접종사업	가.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위탁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기안		○			
13. 건강진단	가.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	기안		○			
	나. 감염병 전염 의심이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강제적 건강진단	기안			○		
	다. 건강진단 등 신고	기안		○			
14. 감염병 관리	가. 감염병 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	기안			○		
	나. 법정감염병환자 신고 및 보고	기안		○			
	다.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기안		○			
	라. 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기안			○		
	마. 감염병 사업비 지급	기안		○			
	바. 감염병 환자명부의 작성 및 보고	기안		○			
	사. 감염병 역학조사 및 관리	기안			○		
	아.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	기안		○			
	자. 생물테러관련업무	기안			○		
	차. 신종감염병 관리	기안			○		
	카. 감염병 예방위원 임명	기안			○		
	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기안			○		
	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행정처분	기안		○			
15. 방역	가. 방역대책 수립	기안			○		
	나. 방역약품, 기자재관리	기안		○			
	다.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기안		○			
	라. 방역소독	기안		○			
	마. 방역기동반 운영 및 역학조사	기안		○			
	바.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기안		○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과장	소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6. 소독업 관리	가. 소독업의 신고	기안		○			
	나. 소독업의 신고사항 변경	기안		○			
	다.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기안		○			
	라. 행정처분 등	기안		○			
	마. 청문 및 사전처분통지	기안		○			
	바. 소독업무 지도감독	기안		○			
	사.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감독	기안		○			
17. 한센병	가. 한센환자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	기안			○		
	나. 한센환자 진료 및 관리	기안		○			
	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기안		○			
18. 후천성면역결핍증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및 역학조사	기안		○			
	나. 감염자 및 환자관리	기안		○			
	다. 의료비 지급 등	기안		○			
19 국가결핵관리사업	가. 계획수립 및 평가	기안			○		
	나. 결핵환자 등록 및 약품관리	기안		○			
	다. 전염성 결핵환자의 업무종사 및 등교 일시 제한	기안			○		
	라. 결핵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건강진단 미실시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바. 결핵환자 입원명령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잠복결핵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기안		○			
20. 의료·약사	가. 의료·약사행정의 종합계획	기안					○
21. 의료기관 관리	가.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 및 신고	기안			○		
	나.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기안		○			
	다.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휴·폐업, 재개업 신고	기안		○			
	라. 개설허가증 및 신고필증 재교부	기안		○			
	마. 의료단체(분회)설치	기안			○		
	바. 의료보수	기안		○			
	사. 업무개시 명령	기안			○		
	아. 보고와 검사업무 등	기안		○			
	자.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등	기안		○			
	차. 진단용방사선 신고사항 변경	기안		○			
	카.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기안		○			
	타. 행정처분 등(과징금, 과태료 처분 포함)	기안		○			
	파. 의료지도원 임명	기안		○			
	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등록신고	기안		○			
	거. 특수의료장비 변경사항 통보	기안		○			
	너.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신고	기안		○			
22. 응급의료	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안			○		
	나. 구급차의 다른 목적 사용금지	기안		○			
	다.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감독	기안		○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개설·영업허가취소·폐쇄명령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기안			○		
	마.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기안		○			
	바. 행정처분 등(과징금, 과태료 처분 포함)	기안		○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과장	소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사. 응급장비 설치신고(양도·폐기·이전 포함)	기안		○			
23. 약국관리	가. 약국개설 등록	기안		○			
	나. 약국등록사항 변경	기안		○			
	다. 약국제제(조제)품목 신고	기안		○			
	라. 약업소(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기안		○			
	마. 보고와 검사	기안		○			
	바. 업무개시 명령	기안			○		
	사. 행정처분 등(과징금, 과태료 처분 포함)	기안		○			
	아.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기안		○			
	자.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기안		○			
	차. 약국개설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기안		○			
24.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기안		○			
	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기안		○			
	다.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기안		○			
	라. 행정처분 등	기안		○			
	마. 보고와 검사	기안		○			
	바.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증 재교부	기안		○			
25. 의약품 판매업	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기안			○		
	나. 의약품 도매상 허가사항 변경신청	기안		○			
	다.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변경승인신청	기안		○			
	라. 특수장소의 의약품 취급자 지정 신청	기안			○		
	마. 한약업사 허가신청	기안		○			
	바. 한약업사 허가사항 변경신청	기안		○			
	사. 한약업사 이전허가 신청	기안		○			
	아. 불량의약품 폐기	기안		○			
	자. 행정처분 등 (과징금, 과태료처분 포함)	기안		○			
	차.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기안		○			
	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등록 신청	기안		○			
	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변경등록)신청	기안		○			
	파. 의약품 판매업(휴업, 폐업, 업무재개)신고	기안		○			
	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취소	기안		○			
	거. 안전상비의약품 등록증 재교부	기안		○			
	너. 의약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더.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체 지정	기안			○		
	러.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기안		○			
26.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관리	가. 안경업소 개설등록	기안		○			
	나.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휴업·폐업 포함)	기안		○			
	다. 안경업소 보고와 검사	기안		○			
	라.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기안		○			
	마.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휴업·폐업 포함)	기안		○			
	바. 청문 및 사전처분통지	기안		○			
	사.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처분 포함)	기안		○			
	아.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기안		○			
27. 의료유사업	가.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	기안		○			
	나. 의료유사업자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기안		○			
28. 마약류 관리	가.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및 지정	기안			○		
	나. 마약류 취급자의 변경허가	기안		○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과장	소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다.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기안		○			
	라.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사항 변경	기안		○			
	마.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지정사항 변경	기안		○			
	바. 허가증·지정서의 재교부	기안		○			
	사. 폐업 등의 신고 및 허가증 등의 반납	기안		○			
	아. 마약류 구입서(판매서)교부 신청	기안		○			
	자. 사고 마약류의 처리	기안		○			
	차. 자격상실의 마약처분	기안		○			
	카. 마약 등의 판매 승인	기안		○			
	타. 마약의 도·소매 보고	기안		○			
	파. 마약류 인계 신고	기안		○			
	하. 허가 등의 제한	기안		○			
	거. 마약류 취급장소(업소)출입, 검사와 수거	기안		○			
	너.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기안		○			
	더. 행정처분 등(과징금, 과태료 처분 포함)	기안		○			
	러.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기안		○			
	머. 마약류 감시원 임명	기안		○			
	버. 마약류 명예지도원 임명	기안		○			
	서. 대마 재배자의 보고	기안		○			
29. 세탁물관리	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의 신고	기안		○			
	나. 감염예방교육	기안		○			
	다. 세탁물 처리실적 관리	기안		○			
	라. 행정처분	기안		○			
	마. 세탁물처리업자 및 의료기관 지도·보고 및 청문(처분사전통지 포함)	기안		○			
30. 안마시술소	가.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기안		○			
	나. 안마시술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다. 안마시술소 휴·폐업, 재개업 신고	기안		○			
	라.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기안		○			
	마. 행정처분 등	기안		○			

○ 건강증진과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과장	소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인사복무	가. 소내 직원 배치		기안		○		
	나. 출장명령 및 복명처리						
	(1) 과장 관내·외출장	기안			○		
	(2) 직원 관내·외 출장	기안		○			
	다. 연가, 병가 및 공가	기안					
	(1) 과장	기안			○		
	(2) 직원	기안		○			
	라. 조퇴, 외출						
	(1) 과장	기안			○		
	(2) 직원	기안		○			
	마.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비상 근무	기안			○		
	사. 당직명령 및 감독	기안		○			
2. 문서관리	가. 중요문서 보관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문서 보관 및 관리	기안	○				
	다. 각종 관인관리	기안		○			
3. 예산·회계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	가. 예산편성 및 자료 제출	기안			○		
	나. 예산배정, 자금배정 요청	기안		○			
	다. 보건시설의 행정재산관리	기안		○			
	라. 정수물품 승인 요청	기안		○			
	마. 물품불용 결정 및 처분	기안			○		
	바. 차량 운행 및 관리	기안		○			
4. 입찰 및 계약	가. 입찰공고	기안			○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결과 보고	기안			○		
	다. 입찰집행	기안		○			
	라. 예정가격 결정, 입찰 및 계약	기안			○		
	마. 계약 체결사항 보고	기안		○			
5. 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	기안					
	(1) 위원장이 부구청장인 경우	기안				○	
	(2) 위원장이 소장인 경우	기안			○		
	나. 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1) 위원장이 부구청장인 경우	기안				○	
	(2) 위원장이 소장인 경우	기안			○		
	다. 위원회 운영 일반	기안		○			
6. 기간제 근로자 관리	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기안					○
	나. 사역관리 및 급여 지급	기안		○			
7. 국민건강증진	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평가	기안			○		
	나. 금연 관련 업무	기안		○			
	다. 국민건강증진 관련 지도 단속	기안		○			
	라. 금연 지도원 운영	기안		○			
	마. 영양플러스사업	기안		○			
	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기안		○			
	사. 보건교육	기안		○			
8. 구강보건	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나. 구강보건교육	기안		○			
	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의료비 지원사업	기안		○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과장	소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9. 모자보건사업	가. 모자보건사업 계획 및 평가	기안			○		
	나. 모자보건사업 실적보고	기안		○			
	다. 영유아 및 임산부 관리	기안		○			
	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안		○			
	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급 및 환아 관리	기안		○			
	바. 성교육	기안		○			
	사. 난임부부 지원사업 관리 및 실적 보고	기안		○			
	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안		○			
10. 산후조리원 관리	가. 산후조리업 신고	기안			○		
	나. 산후조리원 폐업, 휴업, 지위승계, 재개신고	기안		○			
	다. 산후조리원 폐쇄 등	기안			○		
	라. 행정처분 등(과징금, 과태료 처분 포함)	기안			○		
	마.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기안		○			
11.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관련 일반 사항	기안			○		
	다. 위탁 기관 선정 및 변경	기안					○
	라. 위탁 운영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기안			○		
	마. 시설·개보수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12. 암 관리사업	가. 계획수립 및 평가	기안			○	———	
	나. 검진비 지급 및 대상자관리	기안		○		———	
	다. 암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전반	기안		○			
13.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나.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14. 만성질환관리	가.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나. 만성질환자 관리 및 실적보고	기안		○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사업 전반	기안		○			
15. 치매예방관리 및 센터운영	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나. 치매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치매지원센터운영	기안		○			
16.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라.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방문대상자 등록 및 관리	기안		○			
	아. 재가 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7. 지역사회중심 재활 및 물리치료	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 전반	기안		○			
	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8. 정신보건	가.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	기안			○		
	마. 행정입원 검토	기안			○		
	바. 행정입원 의뢰 및 해제	기안		○			
19.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가. 설치신고	기안			○		
	나. 신고사항 변경신청	기안		○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과장	소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다. 폐지, 휴지, 재개신고	기안		○			
	라. 청문 및 행정처분	기안		○			
	마. 폐쇄 및 사업정지	기안			○		
20.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나. 검진비 지급 및 예탁	기안		○			
	다. 실적 및 예산현황 보고	기안		○			
21.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	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나. 검진비 지급 및 대상자관리	기안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단위업무를 조정하고, 결재권의 배분 원칙에 따라 세부사무별 전결권자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 사항 반영(별표)

1) 관광해양개발과, 사회복지과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

○ 관광해양개발과 → 관광진흥과

○ 사회복지과 → 노인장애인과

2)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설

나. 사무 조정 사항 반영(별표)

1)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 경제일자리담당관

2) 공유수면 관리, 연안 관리 : 관광진흥과 → 농수산과

3) 공무직 직종 명칭 변경 반영 :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직

4) 북구시설관리공단 이관 사무 삭제 : 문화체육과

5)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변경(구청장 → 관장)에 따른 전결권 조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6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8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북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본청 합계				485	
기획조정실	실 합계			114	
	기획예산 담당관	계		26	
		일반직	소계	26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8	행정8
			7급	10	행정7, 행정/임기제 행정3
			8급	6	행정5, 행정/전산1
			9급	0	
기획조정실	주민소통 담당관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행정/세무1, 행정/시설1, 행정/공업1
			7급	9	행정4, 행정/임기제 행정2, 행정/사회복지1, 시설2
			8급	3	행정2, 행정/보건1
			9급	1	행정1
기획조정실	경제일자리 담당관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8	행정7, 공업1
			8급	3	행정3
			9급	1	행정1
기획조정실	회계담당관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공업1
			7급	8	행정4, 행정/시설1, 공업2, 운전1
			8급	3	행정2, 운전1
			9급	1	행정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기획조정실	징수담당관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3	행정/세무3
			7급	5	행정1, 행정/세무1, 세무3
			8급	3	행정/세무2, 세무1
			9급	2	행정1, 행정/세무1
기획조정실	부과담당관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세무2, 세무3
			7급	6	행정/세무1, 세무5
			8급	6	세무6
			9급	3	행정/세무1, 세무2
행정지원국	국 합계			118	
	총무과	계		22	
		정무직		1	구청장
		일반직	소계	20	
			3급	1	부이사관1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운전1
			7급	5	행정5
			8급	6	행정3, 행정/임기제 행정1, 운전2
			9급	0	
		별정직	소계	1	
			6급상당	1	비서1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5	행정3, 행정/임기제 학예연구1, 시설1
			8급	6	행정2, 행정/시설2, 보건1, 행정/공업1
			9급	0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행정지원국	교육 청소년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임기제 행정1
			7급	5	행정3, 행정/임기제 행정1, 행정/시설1
			8급	3	행정1, 행정/임기제 행정1, 행정/사회복지1
			9급	3	행정2, 공업1
행정지원국	관광진흥과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6	행정2, 행정/시설1, 시설3
			8급	2	행정2
			9급	0	
행정지원국	도서관과	계		27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1
			6급	7	행정6, 행정/사서1,
			7급	5	행정1, 사서3, 행정/사서1
			8급	8	사서3, 행정/사서3, 전산1, 공업1
			9급	6	행정1, 행정/사서1, 사서4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계		27	
		일반직	소계	27	
			5급	1	시설1
			6급	5	행정2, 시설3
			7급	8	행정4, 행정/시설1, 시설3
			8급	6	행정3, 시설3
			9급	7	행정5, 시설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복지환경국	국 합계			116	
	복지지원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4	행정1, 사회복지3
			8급	7	행정1,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5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복지환경국	노인 장애인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7급	4	행정1, 사회복지2, 시설1
			8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1, 행정/시설1, 사회복지1
			9급	3	사회복지3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계		23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2, 사회복지1
			7급	7	행정2, 행정/사회복지3, 사회복지2
			8급	5	행정1, 행정/사회복지4
			9급	5	행정3, 사회복지2
복지환경국	농수산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농업/해양수산1
			6급	4	행정/농업/해양수산1, 농업2, 해양수산1
			7급	8	행정1, 농업3, 농업/수의/해양수산1, 수의1, 해양수산1, 시설/해양수산1
			8급	6	행정/농업1, 농업/해양수산1, 해양수산2, 시설1, 농업1
			9급	0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계		22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4	행정/환경1, 보건2, 공업/환경1
			7급	8	행정1, 공업/환경1, 보건4, 환경2
			8급	4	행정/환경1, 공업/환경1, 보건1, 행정/환경/공업1
			9급	5	보건3, 공업/환경2
복지환경국	환경미화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환경1, 운전1
			7급	4	행정1, 행정/환경1, 환경1, 운전1
			8급	6	행정2, 행정/환경1, 운전3
			9급	1	행정1
안전건설국	국 합계			137	
	안전정보과	계		30	
		일반직	소계	30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2, 행정/시설1, 전산1, 방송통신2
			7급	11	행정2, 행정/시설1, 전산2, 시설1, 시설/방재안전1, 방송통신4
			8급	8	행정2, 행정/시설1, 전산2, 시설1, 방송통신1, 임기제 방재안전1
			9급	3	방송통신1, 행정/임기제 행정2
안전건설국	건설과	계		26	
		일반직	소계	26	
			5급	1	시설1
			6급	6	행정2, 시설3, 공업1
			7급	7	행정1, 공업1, 시설5
			8급	9	행정1, 행정/시설1, 공업/환경1, 시설5, 공업1,
			9급	3	공업1, 시설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안전건설국	도시과	계		22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시설2, 시설2, 시설/임기제 시설2
			7급	8	행정2, 행정/시설1, 시설4, 시설/임기제 시설1
			8급	6	행정/시설1, 시설5
			9급	1	시설1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녹지1
			6급	4	행정/녹지2, 행정/녹지/시설1, 녹지1
			7급	7	행정1, 행정/녹지1, 녹지4, 농림운영1
			8급	3	녹지2, 녹지/시설1
			9급	4	행정/녹지1, 녹지2, 녹지/시설1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7	행정5, 시설1, 운전1
			8급	5	행정4, 행정/시설1
			9급	1	행정1
안전건설국	건축주택과	계		23	
		일반직	소계	23	
			5급	1	시설1
			6급	5	행정1, 시설4
			7급	9	행정1, 행정/시설1, 시설6, 전기운영1
			8급	7	행정2, 시설5
			9급	1	시설1

【별표 3】

북구 보건소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보건소		계		49	
	보건행정과	일반직	소계	26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3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1, 의무/임기제 의무2
			6급	5	행정1, 행정/간호/의료기술1, 임기제 수의/의무/약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보건진료1
			7급	8	행정1, 임기제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간호3, 보건/약무1, 보건진료1
			8급	8	보건1, 보건/의료기술/간호1, 간호2, 의료기술2, 공업1, 운전1
			9급	1	운전1
	건강증진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1
			6급	5	보건/의료기술/간호5
			7급	7	보건1, 의료기술2, 간호2, 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8급	9	보건/의료기술1, 간호3, 의료기술2, 보건1, 보건/임기제 보건2
			9급	1	보건/의료기술1

【별표 5】

북구 동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5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동	동 합계			121	
	농소1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6	행정3, 사회복지2, 간호1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동	농소2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6	행정4, 사회복지1, 간호1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동	농소3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2, 행정/농업1, 사회복지1
			8급	9	행정5,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간호1
			9급	2	행정2
동	강동동	계		14	
		일반직	소 계	14	
			5급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8급	7	행정4, 행정/농업1, 사회복지1, 간호1
			9급	2	행정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동	효문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9	행정6, 사회복지2, 간호1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동	송정동	계		15	
		일반직	소 계	15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5	행정2, 사회복지2, 간호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동	양정동	계		12	
		일반직	소 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8급	5	행정3, 행정/사회복지1, 간호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동	염포동	계		12	
		일반직	소 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8급	5	행정3, 사회복지1, 간호1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별표 6】

북구 기구표 (제3조 관련)

기구	실·국	담당관·과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1실 3국	6담당관 18과 99담당	1과 2전문(1담당)	1소 2과(9담당)	1소(2담당)	8동(16주무)

정원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동
	679	485	15	49	9	121

[범례] 이동 / 신설 / 명칭변경

구청장

부구청장

- 기획조정실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 예산, 홍보, 의회법무, 정책개발
  - 주민소통담당관: 민원소통, 자치행정, 생활민원, 감사
  - 경제일자리담당관: 산업정책, 기업투자, 청년정책, 일자리지원, 사회적경제
  - 회계담당관: 경리, 계약, 재산관리
  - 징수담당관: 세정, 체납관리, 세외수입
  - 부과담당관: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과표
- 행정지원국
  - 총무과: 총무, 인사, 노사복지
  - 문화체육과: 문화진흥, 문화유산, 체육지원
  -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 평생학습, 청소년
  - 관광진흥과: 관광정책, 관광개발, 관광산업
  - 도서관과: 도서관정책, 중앙도서관, 매곡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 민원지적과: 민원가족등록, 여권,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관리
- 복지환경국
  - 복지지원과: 복지정책,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지원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아동보호, 보육, 인구정책, 아동친화드림
  - 농수산과: 농업정책, 농수산유통, 축산원예, 수산진흥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환경지도, 생활환경, 위생관리, 위생지도
  - 환경미화과: 환경미화, 재활용, 폐기물관리
- 안전건설국
  - 안전정보과: 안전정책, 재난관리, 민방위, 정보관리, 정보통신, 통합관제
  - 건설과: 건설행정, 토목, 치수, 하수, 기전
  - 도시과: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기획, 도시재생시설, 도시경관
  - 공원녹지과: 공원, 산림, 녹지, 정원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 건축주택과: 건축, 주택, 건축관리, 공공시설, 광고물관리

□ 의 회

- 의회사무과
  - 의사
  - 전문위원
  - 전문위원

□ 직속기관

- 보건소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 의약관리, 감염병관리, 역학조사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건강돌봄, 생애건강관리, 정신보건, 예방지도

□ 사업소

- 문화예술회관: 경영관리, 예술사업

- 농소1동: 행정, 복지
- 농소2동: 행정, 복지
- 농소3동: 행정, 복지
- 강동동: 행정, 복지
- 효문동: 행정, 복지
- 송정동: 행정, 복지
- 양정동: 행정, 복지
- 염포동: 행정, 복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개정에 따라 부서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조정

1) 부서 분리 및 담당 배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보건행정과 : 보건행정, 의약관리, 감염병관리, 역학조사

○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 건강돌봄, 생애건강관리, 정신보건, 예방지도

2) 부서명 변경

○ 관광해양개발과 → 관광진흥과

○ 사회복지과 → 노인장애인과

3) 담당 신설 : 청년정책담당(경제일자리담당관)

4) 담당 통합

○ 경제일자리담당관 기업지원담당, 투자유치담당 → 기업투자담당

○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해양관광담당 → 관광개발담당

5) 담당명 변경

○ 경제일자리담당관 지역경제담당 → 산업정책담당

나. 정원 조정 : 총 정원 변동 없음(679명)

1) 기획예산담당관

○ 행정7급 △2 → 행정6급 증2 ※ 직급 조정

○ 행정8급 △1 ※ 교통행정과 정원 이관

2) 주민소통담당관

○ 행정6급 △1 → 행정·공업6급 증1 ※ 직렬 조정

3) 경제일자리담당관

○ 행정8급 △1 ※ 환경위생과 정원 이관, 직렬 및 직급 조정

4) 문화체육과

○ 행정·공업8급 증1 ※ 관광진흥과 정원 재배치

4) 관광진흥과

○ 행정·해양수산·시설6급 △1, 행정·공업8급 △1, 해양수산8급 △1

※ 보건소, 문화체육과, 농수산과 정원 이관

5) 농수산과

○ 수산진흥담당 : 해양수산8급 증1 ※ 관광진흥과 정원 재배치

○ 농업9급 △1 → 농업8급 증1 ※ 직급 조정

6) 환경위생과

○ 시설8급 △1 → 행정·환경·공업8급 증1 ※ 직렬 조정

○ 보건9급 증1 ※ 경제일자리담당관 정원 재배치, 직렬 및 직급 조정

7) 건설과

○ 시설8급 증1 ※ 도시과 정원 재배치

○ 공업9급 △1 → 공업8급 증1 ※ 직급 조정

8) 도시과

○ 시설8급 △1 ※ 건설과 정원 이관

9) 교통행정과

○ 행정8급 증1 ※ 기획예산담당관 정원 재배치

10) 보건행정과(4담당 26명) : △30 ※ 건강증진과 22, 동 8 정원 이관

○ 소장1, 과장1, 관리의사2

○ 보건행정담당 : 8

- 행정6 1, 보건진료6 1
- 행정7 1, 보건진료7 1, 보건/의료기술/간호7 1,
- 공업8 1, 간호8 1
- 운전9 1

○ 의약관리담당 : 3

- 행정/간호/의료기술6 1
- 간호7 1
- 의료기술8 1

○ 감염병관리담당 : 6

- 보건/의료기술/간호6 1
- 보건/약무7 1
- 보건8 1, 의료기술8 1, 간호8 1, 운전8 1

○ 역학조사담당 : 5

- 임기제 수의/의무/약무/간호6 1
- 임기제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7 1, 간호7 2,
- 보건/의료기술/간호8 1

11) 건강증진과(5담당 23명) 증23 ※ 관광진흥과 1, 보건행정과 22 정원 재배치

○ 과장 :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5 1

※ 관광진흥과 정원 재배치, 직렬 및 직급 조정

○ 건강증진담당 : 7

- 보건/의료기술/간호6 1
- 의료기술7 1, 보건/간호7 1, 보건/의료기술/간호7 1,
- 보건/임기제보건8 2, 간호8 1

○ 건강돌봄담당 : 3
- 보건/의료기술/간호6 1
- 간호7 1
- 보건8 1

○ 생애건강관리담당 : 5
- 보건/의료기술/간호6 1
- 의료기술7 1
- 의료기술8 1, 간호8 1
- 보건/의료기술9 1

○ 정신보건담당 : 4
- 보건/의료기술/간호6 1
- 간호7 1
- 의료기술8 1, 간호8 1

○ 예방지도담당 : 3
- 보건/의료기술/간호6 1
- 보건7 1
- 보건/의료기술8 1

12) 농소1동

○ 사회복지6급 △1 → 행정·사회복지6급 증1 ※ 직렬 조정

○ 간호8급 증1 ※ 보건소 정원 재배치, 주공사업 방문 간호인력

13) 농소2동

○ 사회복지6급 △1 → 행정·사회복지6급 증1 ※ 직렬 조정

○ 간호8급 증1 ※ 보건소 정원 재배치, 주공사업 방문 간호인력

14) 농소3동

○ 사회복지6급 △1 → 행정·사회복지6급 증1 ※ 직렬 조정

○ 간호8급 증1 ※ 보건소 정원 재배치, 주공사업 방문 간호인력

15) 강동동

○ 사회복지6급 △1 → 행정·사회복지6급 증1 ※ 직렬 조정

○ 간호8급 증1 ※ 보건소 정원 재배치, 주공사업 방문 간호인력

16) 효문동

○ 사회복지6급 △1 → 행정·사회복지6급 증1 ※ 직렬 조정

○ 간호8급 증1 ※ 보건소 정원 재배치, 주공사업 방문 간호인력

17) 송정동

○ 사회복지6급 △1 → 행정·사회복지6급 증1 ※ 직렬 조정

○ 간호8급 증1 ※ 보건소 정원 재배치, 주공사업 방문 간호인력

18) 양정동

○ 사회복지6급 △1 → 행정·사회복지6급 증1 ※ 직렬 조정

○ 간호8급 증1 ※ 보건소 정원 재배치, 주공사업 방문 간호인력

19) 염포동

○ 사회복지6급 △1 → 행정·사회복지6급 증1 ※ 직렬 조정

○ 간호8급 증1 ※ 보건소 정원 재배치, 주공사업 방문 간호인력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6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8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직 등의 정원표(제5조 관련)

부 서 명	계	공무직				청원경찰
		사무실무원	전문실무원	시설관리원	환경공무직	
총 계	119			66	50	3
본청 소계	105			52	50	3
주민소통담당관	4			4		
징수담당관	2			2		
총무과	6			6		
문화체육과	2			2		
도서관과	8			8		
복지지원과	3			3		
사회복지과	1			1		
가족정책과	5			5		
농수산과	2			2		
환경미화과	51			1	50	
건설과	10			9		1
도시과	3			2		1
공원녹지과	4			4		
교통행정과	2			2		
건축주택과	2			1		1
의회사무과 소계	1			1		
의회사무과	1			1		
직속기관 소계	8			8		
보건행정과	2			2		
건강증진과	6			6		
사업소 소계	3			3		
문화예술회관	3			3		
동 소계	2			2		
농소2동	1			1		
강동동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보건소 분과에 따라 부서별 공무직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

2. 주요내용

가. 보건소 공무직 정원 : 총 정원 변동 없음(8명)

나. 보건소 부서별 공무직 정원 배치

○ 보건행정과 : 2

- 진료실 및 건강관리실 운영 1, 민원실 운영 1

○ 건강증진과 : 6

- 방문건강관리 3, 치매안심센터관리 2, 금연상담 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3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성 명	주 소					
'21.06.16.	제2021-6호	예술공동체 우린 (대표: 박선지)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58, 2층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67-16번지	400	2021.06.17. ~ 2021.06.20.	문화예술캠페인 운영을 위한 이동시설물 설치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3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진장16길 4	진장명촌지구 37B 7L	2021. 6. 24.	건축물 멸실
명촌로 52	진장명촌지구 103B 5-1L	2021. 6. 24.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4)**에 문의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 (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6.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857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귀하

주소:

____년__월__일, 제__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건축물, 장애물 등)을 __년___월___일까지 _____(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_____(대집행관청)에서(또는 ____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및 제4조제1항제__호)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년 월 일 시				

년 월 일

행 정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8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정원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위원회 기능· 역할 강화

○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정원 문화도시 조성

2. 주요내용

○ 각종 사업 검토, 자문을 위한 정원 전문가 활용 신설(안 제9조의2)

-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채용하여 활용.

○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16조)

- 위원 확대 : 9명 이내 ⇒ 25명 이내
- 위원장 : 호선 ⇒ 부구청장

3. 근거법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7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4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공원녹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1) 전자우편 : terrygus@korea.kr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공원녹지과

3) 팩 스 : 052-241-793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공원녹지과(052-241-7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원 전문가의 활용)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9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정원 전문가의 활용)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 ---------- 25명 ---------- ---------- ----------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7(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